

영등포구의회
제161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
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7. 4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63호로 2011년 6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흡연 및 간접흡연의 용어 정의 (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 함.(안 제4조)

다.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, 지정의 방법 구보에 고시, 금연구역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
- 라. 금연구역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,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 함.(안 제7조)
- 마.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.(안 제10조)
- 바.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로 함.(부칙)

4. 참고사항

□ 관계법령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 및 제34조
- 「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『국민건강증진법』이 2010. 5. 27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, 학교절대정화구역, 구 관할 버스정류소, 특화거리,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,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.

-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, 장소 및 범위를 구보에 고시토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의무를 부여함
- 안 제7조에 금연구역 지정시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, 크기, 설치방법,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- 안 제8조제1항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, 어린이놀이터, 학교절대정화구역, 버스정류장, 특화거리,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등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
- 안 제8조제2항에 흡연구역 설치자 준수사항으로 흡연구역 시설의 규모,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, 위치 등을 정하도록 하고 흡연구역에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, 환기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, 크기, 설치방법,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- 안 제9조에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금연교육을

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
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

- 안 제10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
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
항 등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도록 함
- 안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.
- 2011. 2. 1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「서울특별시 자치구 간
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연구역 지정시
기, 금연구역 범위, 과태료 부과액 10만원 일원화, 2012.
1. 1일 조례 시행일 등을 반영하여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
최소화 함.
- 종합적인 검토결과,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『국민건강증진
법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
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지
나 저촉되지 않으며,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
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국민건강증진법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

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·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

2.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

3.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

2.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3.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
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도시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) 및 어린이 놀이터
2. 학교정화구역(「학교보건법」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)
3.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
4.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
5.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
6.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과태료) ① 시장은 제5조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